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. 12. 28. 조례 제3458호 일부개정 2024. 5. 31. 조례 제3637호(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안양시 답례품 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(이하 "답례품"이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
 - 2.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·심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단,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
 - 2. 안양시의회(이하 "의회"라고 한다)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 - 3.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4. 지역 내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
 - 5. 상품 · 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
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사람
 - ③ 제1항의 선정위원회는 제11조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성·운영한다.
 -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

다.

-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,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주용하다.
- 제3조(답례품의 종류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생산·채취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·제조한 물품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, 숙박, 관광,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5. 31.>
 - 1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
 - 2. 「축산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
 - 3.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 산물
 - 4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통주
 - 5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
 - 6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
 - 7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
 - 8.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
 - 9.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
 - 10. 시의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
 - 11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승공예품
 - 12. 경기안양사랑상품권, 관광 입장권 등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

- 1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·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
- 제4조(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)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 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
 - 2. 답례품의 보관·상품화·품질관리·배송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
 - 3.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
 - 4. 최근 3년간 생산·공급 실적 및 매출액
 - 5.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
 - 6.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,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·판매 여부
 - 7.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)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
 - 2.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
 - 3.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.
- 제6조(답례품비의 지급)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 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시장은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.
 - 1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
 - 2.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
 - 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

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

- 4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
- 5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
- 제8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 - ② 기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・관리한다.
 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제9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제10조(기금운용관)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: 고향사랑기부 담당 과장
 - 2. 기금출납원: 고향사랑기부 담당 팀장
 -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
- 제11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 안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- 3.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단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 :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회계사,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
 - 나.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 - 다.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 - 라.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
- 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2.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제1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

-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심의를 회피해야 한다.
- 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8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존해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.
 -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- 2.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 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
- 제19조(심의위원회의 간사)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되다.
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· 보존에 관한 사무
 - 3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- 제20조(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)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21조(위원의 수당 등)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2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.
 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- 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23조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

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
- 2.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-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서류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 · 운영
 - 2.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
 - 3.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
 - 4.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
- 제3조(기부금 모집·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)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부칙 <2024. 5. 31. 조례 제3637호,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1호 중 "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무형

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부터 ⑨ 까지 생략